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3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김미애 · 김민전 · 김소희

김선교 · 박상웅 · 성일종

이종배 · 조은희 · 조정훈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얹혀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 감독기관 산하 조사구조는 ‘셀프조사’로 귀결될 위험이 있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향후 국가배상 및 형사책임 등의 규명 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 등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희생자”란 항공 · 철도사고등 당시 사망한 사람 및 항공 · 철도사고등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9.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나. 항공 · 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희생자 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및 제6호 중 “임직원”을 각각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②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 또

는 제2항의 사유에”로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증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증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4(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5(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6(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7(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의8(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로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당”을 “피해자 등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인”을 “피해자 등 관계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조치계획”을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으로, “통보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개금지”를 “공개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 · 수집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복사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7.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8.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9.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①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희생자”란 항공 · 철도사고 등 당시 사망한 사람 및 항공 · 철도사고등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u></p> <p><u>9.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p> <p>나. 항공 · 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희생자 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p>

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신 설〉

〈신 설〉

〈설설〉

----- 임직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7.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
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
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9.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철

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천
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신 설>

②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
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
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 (생
략)

<신 설>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피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

제19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3(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

<신 설>

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4(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

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5(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의6(증인등의 선서) ① 위

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7(증인등의 보호) ① 증

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

언 · 감정 · 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19조의8(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 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 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

	<p><u>용한다.</u></p> <p><u>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p>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p> <p>-----</p> <p>-----<u>피해자 등 해당</u>-----</p> <p>-----</p> <p>-----</p> <p>-----</p> <p>-----.</p>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u>해당</u>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p>② -----</p> <p>-----</p> <p>-----<u>피해자</u></p> <p>-----<u>등 관계인</u>-----</p> <p>-----.</p>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u>관계인</u>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안전권고 등) ① (생략)	<p>제26조(안전권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90일 이내에 조치계획</u>-----<u>제출</u>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p>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u>조치계획</u> 및 결과를 위원회에 <u>통보하여야 한다.</u>	

제28조(정보의 <u>공개금지</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약-----. 제28조(정보의 <u>공개금지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 · 수집 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 는 그 대리인의 열람 · 복사 신 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 지 아니한 자
<u><신 설></u>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 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 한 증인
<u><신 설></u>	7.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 하지 아니한 감정인
<u><신 설></u>	8.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 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신 설>

9.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

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